#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399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성일종·박덕흠·송석준

인요한 · 김소희 · 이헌승

장동혁 · 서명옥 · 김상욱

박성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최근 해수온 상승 등 이상기후 현상이 양식생물의 새로운 질병 및 집단폐사를 유발하는 등 양식환경에 큰 변화를 야기함에 따라 양식업 자의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아울러 국내에 해외 수산물 유입증가로 국내 양식물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반면 전기료, 유류비, 사료값 등 경영비는 상승하여 양식업자의 경영난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양식업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장환경이 악화된 해역의 양식업 폐업 및 어장 이동 등 전반 적인 구조개선이 시급하므로 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양식업 폐업을 하는 자에게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

써 체계적인 양식업 구조개선 기반을 마련하여 양식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 까지 신설 등).

###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 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을 지정하려는 경우 어업자단체 등에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의 필요성 등을 알리도록 하고,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어업자단체 등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 신설).
- 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양식시설을 매입하거나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6 신설).
- 라. 폐업대상자의 선정이나 폐업지원금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식업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7 신설).

마.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양식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8 신설).

법률 제 호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제6장의2(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의2 양식업의 구조개선

- 제66조의2(양식업구조개선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이하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양식업구조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목표
  - 2. 구조개선이 필요한 양식업의 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 3.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및 양식업 폐업 대상자 선정 계획에 관한 사항

- 4. 양식업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양식업 구조개선에 대한 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양식업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구조개선계획 중 양식업 폐업 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수립한 양식업구조개선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보 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업 여건의 변화, 특정 수 산자원의 변화 및 양식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양식업

구조개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 제66조의3(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구조개선이 필요한 양식업을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설립된 관련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 1.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
  - 2.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의 지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3.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지정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 제66조의4(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의 신청) ① 제66조의3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양식업 폐업 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양식업 폐업 및 양식시설 처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 2. 양식업 폐업 및 양식시설 처분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항
  - 3. 양식업 폐업 효과에 관한 사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폐업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하고,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결정하는 경우 그 결과와 양식업 폐업 대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의 지정 절차 및 양식업 폐업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한다.
- 제66조의5(양식업 폐업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는 제66조의4에 따라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된 양식업 을 경영하는 양식업자의 신청을 받아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하 여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른 해 당 양식업의 면허권자 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양식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양식업 폐업 절차 등을 알려야 한다.
  - ④ 그 밖에 양식업 폐업 대상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의6(양식업자에 대한 지원)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6조의5에 따라 폐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양식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양식시설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양식업 구조개선 활성화를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직업 교육・훈련
-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폐업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와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의7(이의신청 특례) ① 제66조의5에 따른 폐업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66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한다)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식업자는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이의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기본

- 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66조의8(감정평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6조의9(매입한 양식시설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양식시설을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식업 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한 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원에서의 무상 제공
  - 3. 공공사업에의 활용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 ② 양식시설의 취득과 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66조의10(지원금의 환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폐업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 2. 폐업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려받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7조 중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제66조의8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 2.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79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0. 제66조의6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자
- 11. 제66조의8에 따른 감정평가를 거짓으로 한 자 제8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제6조(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2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9. 양식업 구조개선 목표 및 기
	본방향에 관한 사항
<u>9.</u> (생 략)	<u>10.</u> (현행 제9호와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6장의2 양식업의 구조개선
<u>&lt;신 설&gt;</u>	제66조의2(양식업구조개선계획)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양
	<u>식업 구조개선을 위한 계획(이</u>
	하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
	<u>하여야 한다.</u>
	② 양식업구조개선계획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u>한다.</u>
	1. 기본계획 시행을 위한 세부
	<u>목표</u>

- 2. 구조개선이 필요한 양식업의종류, 목표량, 추진계획
- 3.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및 양 식업 폐업 대상자 선정 계획 에 관한 사항
- 4. 양식업 구조개선에 필요한

   재원 규모와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 5. 양식업 구조개선에 대한 분 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양식업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해양수산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의견을,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 청장의 의견을 듣고 「수산업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 조정위원회 또는 시·도수산조 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 다.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변경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양식업구조개선계획 중 양식업 폐업 대상자 모집기간 등 해양 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세우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 도지사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 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 사가 수립한 양식업구조개선계 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시·도 지사는 보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⑦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양식업 여건의 변화, 특정 수산자원의 변화 및 양식 업자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 여 매년 양식업구조개선계획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 하여야 한다.

제66조의3(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고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66조의2제2항제2 호에 따른 구조개선이 필요한 양식업을 구조개선 대상 양식 업으로 지정하려면 「수산업협 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관 런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자치규 약을 가진 관련 어업자단체, 해 양수산부장관이 설립을 인가한 관련 어업법인 및 어업자단체 에 가입하지 아니한 어업자(이 하 "어업자단체등"이라 한다)에 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야 한다.

- 1. 양식업 구조개선 추진의 필 요성 및 추진계획
- 2.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의 지 정 절차 및 신청 기간
- 3.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지정 의 효과 및 지원 내용 등

제66조의4(구조개선 대상 양식업 의 신청) ① 제66조의3에 따라 고지를 받은 어업자단체등은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 정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양식업 폐업 계획 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식업 폐업 및 양식시설 처 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식업 폐업 및 양식시설 처 분에 필요한 금액에 관한 사

- <u>항</u>
  3. 양식업 폐업 효과에 관한 사 항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양식업 페업 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그 내용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 정할지를 결정하고,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결정하는 경 우 그 결과와 양식업 폐업 대 상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어업자단체등에 알려야 한다.
- ③ 그 밖에 구조개선 대상 양 식업의 지정 절차 및 양식업 폐업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5(양식업 폐업 대상자

선정)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6조의4에 따라 구조개선 대상 양식업으로 지정된 양식업을 경영하는 양 식업자의 신청을 받아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 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0조제1항 또는 제43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양식업의 면허권 자 또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야 한다.
-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 폐업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 는 지체 없이 그 양식업자에게 선정 내용, 지원 내용 및 양식 업 폐업 절차 등을 알려야 한 다.
- ④ 그 밖에 양식업 폐업 대상 자의 선정 절차, 선정의 세부기 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6(양식업자에 대한 지원)

-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66조의5에 따라 폐 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양식 업을 폐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양식시설에 대한 감정가격에 따른 매입
- 2. 평년수익액 3년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업지원금
-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양식업 구조개선 활 성화를 위하여 이에 참여하는 어업자단체등에 행정적·재정 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양식업 을 폐업한 자가 업종을 바꾸거 나 다른 산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직업 교육·훈련
- 2.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 3. 전업 장려금의 보조 또는 융

   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 ④ 제1항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신청, 구체적인 산출 기준과 방법, 폐업지원금의 결정통지 및 지급절차와 제4항에 따른 지원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66조의7(이의신청 특례) ① 제6 6조의5에 따른 폐업대상자의 선정 또는 제66조의6제1항제2 호에 따른 폐업지원금(이하 "폐업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 에 이의가 있는 양식업자는 처 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렁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유와 신청내용을 밝히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이의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

<신 설>

<신 설>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제66조의8(감정평가 등) ①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업지원금을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식에 관한
전문조사연구·교육 기관 또는
공인된 전문감정기관에 용역조
사 또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현장조사 와 검증 등을 할 수 있으며, 관 계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 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에 필 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6조의9(매입한 양식시설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매입한 양식시설을 해체하거나 소각(燒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식

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 · 도지사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업 구조개선에 지장이 없는 범

- 1. 매각 또는 양여(讓與)
- 2. 해외수출 또는 국제협력 차 원에서의 무상 제공
- 3. 공공사업에의 활용
-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용도와 방법
- ② 양식시설의 취득과 처리 절 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6조의10(지원금의 환수) ① 해 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는 폐업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폐업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 려받을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폐업지원금을 지급받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하는 자는-----「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신 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제79조(벌칙) -----

은 경우

- 2. 폐업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돌려받 는 경우에 지원금을 반환할 자 가 기간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 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 분의 예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 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 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7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 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제66조의8제1항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로부터 의뢰를 받아 용역조사 또는 감정평가를 하는 자
- 2. 제76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 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 략) <u><신 설></u>

<신 설>

제81조(과태료) ① (생 략) <u><신 설></u>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행정관청이 부과·징수한다.

,
1. ~ 9. (현행과 같음)
<u>10.</u> 제66조의6제1항에 따른 폐
업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한
<u>자</u>
11. 제66조의8에 따른 감정평가
를 거짓으로 한 자
제8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제8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증
②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증
②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
②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
②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66조의8제2항에 따른 증언 또는 진술을 거짓으로 한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